

주.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속사실 및 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% 감경조치코자 사전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25일

안 동 시



1. 제 목 : 주.정차위반 단속사실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
2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내역서 참조
3. 공고기간 : 2019.09.25. ~ 2019.10.15. (20일간)
4. 근거법령 :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
5.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경상북도 안동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, 우편, FAX(054-840-6259)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 없이 자진납부 하는 경우 20% 감경됨.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(☎054-840-62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우편접수시 의견제출기한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
※ 제출증빙 서류 : 소명요지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☎ 054-840-6252, 팩스 054-840-6259

※ 작성시 유의사항 : 심의결과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
의견진술 조회를 위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·감경 신청서

신청내용구분✓ [의견진술(), 감경신청()]

소유 자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위반내역	위 반 일 시		위 반 장 소		차 량 번 호
	20 년 월 일 (:)				

진술내용 ☞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이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
※ 6하원칙에 의거 (1.누가 2.언제 3.어디서 4.무엇을 5.어떻게 6.왜)

의견 진술	1. 범죄예방,진압, 긴급사건사고 및 조사 () 2. 교통지도단속, 도로공사 () 3.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()
	4.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() 5. 장애인 승하차 관련 () 6.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()

소 명 요 지	

감경 신청 (50%)	해당란에 ○표 하십시오.(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) ※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
	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() 2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() 3. 장애인복지법 제2조[1급, 2급, 3급] ()
	4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[1급, 2급, 3급] () 5. 미성년자 만14세~만19세 ()

위와 같이 의견진술·감경신청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의견진술인 성 명 :

(서명) 소유주와의 관계 :

연락처(핸드폰) :

주 소 :

위 원 (인)	심 사 의 건
부 서 의 건	

담당자	팀 장	과 장	결 재
결 정 내 용			
의견진술		감경신청	
부과()	미부과()	감경()	미감경()

안 동 시 장 귀하

※ 제출증빙 서류 : 소명요지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☎ 054-840-6252, 팩스 054-840-6259

※ 작성시 유의사항 : 심의결과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
의견진술 조화를 위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